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가합503259 판결 [채권매매대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가합503259 판결

전문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 1. 한국산업은행

2. 주식회사 우리은행

3. 농협은행 주식회사

4. 한국수출입은행

5. 주식회사 하나은행

6. 주식회사 대구은행

7. 신용보증기금

변론종결 2015. 10. 22.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7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하나은행 (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피고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수출입 은행법에 따라,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각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원고와 피고들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가 정한 "채권금융기관"으로서 주식회사 팬택(이하 '팬택'이라 한다)에게 신용을 공여한 금융기관들이다.

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 및 공동관리절차 개시

1) 팬택은 2014년부터 영업이 악화되어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팬택의 주거래은행인 피고 한국산업은행은 2014. 2. 27. 원고, 피고 우리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및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게 기촉법에 따라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소집 통보 및 신용공여액 신고 요청을 하였다(이하 위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

위 회의의 일시 및 장소는 2014. 3. 5. 한국산업은행 본관 7층 소회의실이었고, 안건은 제1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2호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 제3호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평가, 제4호 자금관리단 파견 등이었다. 위 제1호 의안에는 "「기촉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팬택을 부 실정후기업으로 인정하고, 「기촉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를 개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제2호 의안에는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을 2014. 3. 5.부터 2014. 6. 4.까지 3개월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2014. 3. 5. 개최된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원고와 신한은행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제1호 내지 제4호 의안이 모두 가결되었고, 이로써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었다.

3) 원고는 2014. 3. 11. 기촉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피고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팬택에 대한 채권을 매수할 것을 서면으로 청구하였다.

4) 이후 피고 한국산업은행은 2014. 5. 30.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속 금융기관들에게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을 2014. 7. 4.까지로 1개월 연장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1) 그러나 연장된 채권행사 유예기간 내에 팬택에 대한 경영정상화계획은 확정되지 못하였고, 이후 팬택은 2014. 8. 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중 양지방법원 2014회합100098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4. 8. 19. 팬택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2) 피고 한국산업은행은 2014. 8. 27.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속 금융기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동관리절차 중단을 통보하였다.

제목 (주)팬택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중단 통보

2. 아시다시피 (주)팬택의 이통 3사에 대한 제품공급 불가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2014. 7. 31.자로 결의된 「(주)팬택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부의안건」은 해당 결의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실행할 수 없게 되었고,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주)팬택의 경영정상화는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3. 이에, (주)팬택은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게 되었고 법원은 2014. 8. 19.자로 (주)팬택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촉법 제4조 제5항에 의거 (주)팬택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는 중단되었고 상기 (주)팬택 제1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결의 내용도 무효화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피고 한국산업은행은 2014. 8. 29. 원고에게 "공동관리절차가 형식적으로 개시되었으나

경영정상화 조치가 취해진 바 없이 중단된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자의 채권을 찬성채권자가 매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채권금융기관 간의 형평성 · 공평성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므로 원고의 채권매수청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내지 9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매매계약의 성립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기촉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피고들에게 채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의결에 찬성한 채권 금융기관인 피고들은 기촉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연대하여 원고가 팬택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매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요지

팬택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는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정하고 이후 연장된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종료일(2014. 7. 4.)까지 팬택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기촉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중단되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채권행사 유예기간 내에 공동관리절차의 최초 단계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되지 못하여 중단된 경우에는 반대채권매수청구권에 내재된 제도본질적 · 권리본질적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를 원인으로 한 반대채권 매매관계는 실효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팬택에 대한 채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기촉법의 관련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권금융기관"이란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2. "채권은행"이란 채권금융기관 중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4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

① 주채권은행은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회 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이하 "채권은행협의회")의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에 따른 협의회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④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 또는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5조(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제4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채권 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제6조(채권행사의 유예)

② 채권금융기관은 대상기업의 규모, 채권금융기관의 수 등을 감안하여 소집이 통보된 7일 이내에 소집되는 1차 협의회에서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을 유예 개시일부터 1개월(자산부채의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되 1회에 한정 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협의회가 제2항에 따라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을 정하지 못하거나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종료일까지 대상기업의 제8조 제1항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8조(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① 협의회는 제5조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부실징후기업과 제6조의 채권행사 유예 기간 내에 의결을 거쳐 해당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영정상화계획"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5조(채권금융기관협의회)

①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해당 기업의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소집 및 운용은 주채권은행이 주관한다.

제17조(협의회의 업무)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및 지속 여부 결정
 3.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의 결정 및 연장
 4. 약정의 체결
 7. 채권재조정 또는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사항

제18조(협의회의 의결방법 등)

① 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한 채권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4분의 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협의회는 그 의결로 구체적인 사안의 범위를 정하여 의결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채권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신용공여액의 신고 등)

① 채권금융기관은 제5조의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 소집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소집통보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18조 제1항에 따른 협의회 의결이 있는 경우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이하 "반대채권자"라 한다)은 협의회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협의회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이하 "찬성채권자"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참석하여 반대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에 한정하며, 그 기간 이내에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협의회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1. 제5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2. 제10조에 따른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

② 찬성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대하여 해당 채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반대채권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매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채권의 매수가액 및 조건은 찬성채권자와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반대채권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찬성채권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찬성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협의회가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반대채권자와 협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찬성채권자(제3항 후단에 따라 위임을 받은

협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반대채권자는 제22조 제1항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의 매수 가액 및 조건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찬성 채권자와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반대채권자가 협의하여 선임한 회계전문가가 해당 기업의 가치와 재산상태, 약정의 이행가능성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한 결과를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손해배상책임 등)

① 채권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채권금융기관이 받은 손해의 범위에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채권금융기관(제20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채권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이 협의회의 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피고들의 채권매수의무 발생 여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기촉법이 정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성격, 기촉법상 채권매수청구권의 효력 상실 등에 관한 규정의 부존재, 관련 의결에 반대한 반대채권자의 의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반대채권자와 찬성 채권자와의 이익 균형, 반대채권자의 지위 불안정 등과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협의회의 공동 관리절차 개시 결의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이 기촉법이 정한 바에 따라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이후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되지 못하여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기촉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반대채권자 채권매수청구권의 성격

(1) 기촉법에 따르면 위 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에 신용공여를 한 채권금융기관은 그 의사와 무관하게 당연히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이 되고(제2조 제1호, 제15조 제 1항 참조), 위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 이하의 소액채권금융기관은 그가 참여를 원하는 경우가 아닌 한 협의회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제16조 참조), 위 협의회에서 4분의 3 이 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대상 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의결하고 채권행사의 유예,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를 결정하면 그와 같은 의결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제5조, 제6조, 제10조, 제17조, 제18조 참조). 그리고 신용공여 계획에 관한 협의회 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권금융기관은 기촉법 제21조에 따라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기촉법 규정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관리절차에 들어가 채권행사를 유예해야 하고 대상 기업에 대한 자신의 채권이 변경되는 것을 용인하거나 대상 기업에 추가적으로 자금을 대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만 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기촉법 제20조에서 정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은 채권금융기관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와 같은 재산권 및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받는 것을 고려하여,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매도함으로써 대상 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지위를 벗어나 의사에 반하는 공동관리절차나 채권행사의 유예, 채권재조정이나 신용공여 부담을 지지 않을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을 규정한 위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기촉법이 채권금융기관의 재산권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협의회 의결에 구속되지 않을 반대채권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기촉법 제20조 제1항은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이하 "반대채권자"라 한다)은 &-&-협회의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이하 "찬성채권자"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대 하여 해당 채권을 매수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그 매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촉법 제20조 제1항이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로 '기촉법

제5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및 '기촉법 제10조에 따른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는 경우로 그 사유를 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은 전자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 위 규정은 반대채권자의 범위,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시기 및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에 따른 매수 주체를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들로 한정시켜 둔 점,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 및 기촉법의 전체적인 체계 등을 고려할 때, 기촉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반대채권자가 협의회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채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찬성채권자들의 승낙 여부와는 관계없이 반대채권자와 찬성채권자 사이에 반대채권자의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채권매매계약의 조건불성취 또는 사후적 실효 여부

(1)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기촉법 어디에도,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종료일까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경영정상화 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지 못하여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 공동 관리절차개시 결의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이 기촉법이 정한 바에 따라 행사한 채권매수청구의 효력이 사후적으로 실효된다거나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에 따른 채권매매계약이 위 경영정상화 약정 체결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들은, 경영정상화 약정이 체결되거나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와 같은 경영정상화조치가 취해진 후에는 공동관리절차가 그 이후에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은 실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만, 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반대한 원고로서도 개시의결 자체가 아니라 경영정상화 약정의 체결로 발생하는 채권재조정 및 신규신용공여 등 각종 조치에 따른 부담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반대한 것이고, 나아가 찬성채권자들의 채권매수의무는

채권행사 유예기간 중 경영정상화 약정이 체결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인데 원고의 주장은 그와 같은 신뢰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마치 합병 또는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상대방 회사 주주총회의 불승인 기타 사유로 무산된 경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게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국 적어도 이 사건과 같이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공동관리절차 개시 후 경영정상화 약정이 체결되지 않아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조건의 불 성취로 인하여 채권매수청구로 인한 채권매매관계는 실효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촉법은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의 사유 및 그에 따른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기촉법이 채권 금융기관의 재산권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협의회의 의결에 구속되지 않을 반대채권자의 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찬성채권자들 사이의 이견으로 경영정상화 약정이 체결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반대채권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이러한 경우에도 반대채권자가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채권금 융기관 사이에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가 위 경영정상화 약정이 체결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공동관리절차의 개시는 원칙적으로 협의회에서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에 따른 의결권의 3/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경영정상화 약정의 체결은 이와 구분되는 절차로 따로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할 뿐 아니라 기촉법에서도 경영정상화 약정 체결은 공동 관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로 예정하고 있는 점, 합병이나 영업양도에 대한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은 합병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 등이 있어야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 반면, 기촉법상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은 공동관리절차 개시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와는 구별 되는 점, 공동관리절차 개시에 따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행사가 유예되는 등 반대채권자의 권리제한을 기촉법이 정한 허용된 부담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 하면, 반대채권자가 형성권인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이미 찬성채권자들의 채권매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기촉법 제20조에 규정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이 경영정상화 약정 체결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거나 공동관리절차가 개시 되더라도 이후 경영 정상화 약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면 사후적으로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아무런 합리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피고들은 경영정상화 약정이 체결된 때부터 비로소 공동관리절차가 실질적으로 개시되는 것이고, 기촉법 제20조 제4항에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약정의 이행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이는 경영정상화 약정이 체결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촉법상 경영정상화 약정 체결은 이와 별개의 절차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로 예정하고 있고, 기촉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에 관한 협의회 의결에 반 대하는 것만으로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기촉법 제20조 제4항에서 채권의 매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약정의 이행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여 반대채권자의 매수청구권 행사가 반드시 경영정상화 약정 체결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기타 달리 형성권의 행사로 이미 발생한 채권매수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공동관리절차는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재조정 및 신규 신용 공여를 통해 대상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를 통해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할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기촉법 제4조 제5항은 부실징후기업이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일시적인 채권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가 이루어질 경우 자신이 보유한 채권의 실질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한 채권금융기관은 공동관리절차에 참여 하고, 반면 부실징후기업의 경영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한 채권금융기관은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공동관리절차에서 이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채권매수청구권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될 것을 조건으로 인정되는 권리라고 해석한다면,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는 것과 상충된다. 즉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반대채권자가 실제로 자신의 예측과 판단이 부합한 경우임에도 오히려 공동관리절차에서 이탈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기촉법이 보장하고 있는 반대채 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된 이후 반대채권자는 부실징 후기업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고 해석되는데, 그 후 반대채권자의 절차 관여 없이 진행된 결과에 따라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이미 성립한 매매계약이 실효된다면 반대채권자로서는 불안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

(4) 한편, 채권금융기관 협의회가 팬택과 경영정상화 약정을 체결하지 못한 것이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팬택과의 경영정상화 약정 체결 여부가 반대채권자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채권매매관계의 성립에 있어 기초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팬택이 채권행사유예기간 내에 경영정상화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결국 팬택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됨으로써 협의회가 의도한 공동관 리절차가 중단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변경은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의 효력을 실효시키거나 그에 따라 성립된 채권매매관계를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찬성채권자들이 반대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매수의무를 부담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및 그에 따른 채권매매관계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 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5) 또한, 기촉법 제20조 제3항, 제4항은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가액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반대채권자와 찬성채권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채권의 매수 가액 및 조건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찬성채권자와 반대채권자가 협의하여 선임한 회계전문가가 해당 기업의 가치와 재산상태, 약정의 이행가능성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한 결과를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조정위원회의 입장과 채권금융기관의 의사결정 관행 등을 기초로 반대채권매수 청구권 행사에 따른 채권의 매매대금은 협의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실징후 기업의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을 부실징후기업의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면, 결국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반대채권자가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로 가져가는 이익은 신속한 채권 회수에 그치고, 그 예상대로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가 실패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동관리절차에 참여한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별다른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반면 찬성채권자는 부실징후 기업의 경영정상화가 성공하여 채권 회수율을 높임으로 공동관리절차 개시 당시 보유한 채권 및 매수한 채권의 실제 가치 또는 매수가액보다 더 많은 이익을 공동관리절차를 통해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가 경영정상화에 성공하면 그 기대와 같은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고 반면 경영정상화가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자신이 기존에 보유한 채권 및 매수청구권 행사로 매수한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므로, 예상과 달리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가 실패에 이르렀다고 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반대채권자보다 언제나 손해를 보게 되는 것도 아니다.

3. 매수청구 채권의 범위 및 매매대금의 결정 등

가. 원고의 팬택에 대한 채권의 범위

1)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팬택에 대하여

10,000,000,000원의 대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채권매수청구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1,240,000,000원의 회사채 (이하 '이 사건 회사채'라고 한다)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4. 17. 팬택이 발행한 1,240, 000,000원의 이 사건 회사채를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채는 원래 원고가 주식회사 팬택엔큐리텔(이하 '팬택엔큐리텔'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이었는데, 2009. 12. 30. 팬택엔큐리텔이 팬택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팬택이 위 채무를 승계한 사실, 팬택엔큐리텔이 팬택에 흡수합병되기 전인 2007. 3. 26. 당시 팬택엔큐리텔에 대하여 기촉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를 진행중이던 채권은행자율협의회는 '원고의 팬택엔큐리텔에 대한 19,714,000,000원의 채권 중 12,223,000,000원을 출자 전환하고,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출자전환이 불가능한 채권은 이자면제채권으로 보유하며, 이자면제채권은 2011. 12. 31.까지 출자전환(또는 사채발행가능시 의무전환사채) 하기로 하되 당해 기업의 채권은행 공동관리가 중단될 경우 출자전환된 것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사실, 원고는 당시 10,983,000,000원에 대해서는 출자전환을 하였으나 나머지 1,240,000,000원(이 사건 회사채이다)에 대해서는 출자전환을 실행할 경우 펀드 약관에 위반사항이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출자전환절차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팬택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에서 안진회계 법인이 작성한 '팬택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수립 검토 보고서(갑 10호증)'에서 이 사건 회사채를 제외한 100억 원의 채권만이 원고의 팬택에 대한 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채는 원고에게 출자의무가 부가되어 있거나 위 의결에 따라 이미 출자전환된 것으로 의제된 채권이어서 팬택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촉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채권매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매매계약의 성립

1) 원고가 2014. 3. 5. 개최된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아 기촉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협의회 의결에 반대한 것으로 의제되었고, 협의회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3. 11. 기촉법 정한 바에 따라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반대채권자인 원고와 찬성채권자인 피고들 사이에서는 2014. 3. 11. 원고의 팬택에 대한 10,000,000,000원의 대출 채권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촉법 제20조 제2항에서 찬성채권자는 채권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대하여 해당 채권을 매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6개월의 기한은 채권매매대금의 이행기를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 3. 11. 성립한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다음날인 2014. 9.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채권매매에 있어서 매수대금 지급의무와 채권양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는 채무자인 팬택에 대한 양도통지를 포함한 원고의 매수청구채권의 양도와 상환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명채권양도의 경우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는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채권양도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어떠한 이행의 제공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이행하기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채권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매매대금의 결정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촉법 제20조 제3항은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채권의

매수가액은 찬성채권자와 반대채권자 간의 협의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 조정위 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대상 채권의 매수가액에 관하여 상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 관한 조정이 신청되지도 않은 경우에는 부실징후기업의 가치와 재산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인정한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가액이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매수 가액 결정의 기준시점은 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로 피고들과의 매매계약이 성립한 2014.

3. 11.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원고가 매수청구한 채권의 적정한 매매가격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채권은행에 의한 부실기업의 공동관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채권매매대금 액수 결정 실무 등에 비추어 볼 때 채권매매대금의 결정기준은 외부전문기관이 평가한 팬택의 청산가치에 따른 채권회수율에 따라 채권매매대금을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팬택에 대한 채권의 청산가치 채권회수율에 관하여, 원고는, 팬택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에서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팬택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수립 검토 보고서'에서 평가한 청산가치 회수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팬택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삼정회계법인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을 4호증)에서 평가한 청산가치 회수율 4.93%(204면 참조)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위 안진회계법인 작성한 위 보고서의 실사기준일(2014. 2. 28.)이 삼정 회계법인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조사기준일(2014. 8. 19.)보다 위 매매계약 성립일 (2014. 3. 11.)에 가까운 점, ② 안진회계법인이 평가한 청산가치 회수율은 팬택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의뢰 받아 원고를 포함한 채 권금융기관들이 보유한 개별 채권의 청산가치를 평가한 것인 반면, 삼정회계법인이 평가한 청산가치 회수율은 팬택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조사위원 지위에서 평가한 것으로 그 평가 당시 상황이 원고의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와 달라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로 피고들과의 매매계약이 성립한 2014. 3. 11. 당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팬택에 대한 채권의 적정한 매매가액은 안진회계법인이 산정한 팬택의

청산가치 회수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위 보고서에 의한 청산가치 회수율 30.67%¹⁾ (갑 10호증 35, 36면 참조)을 적용하여 산정한 원고 채권의 매매가액은 3,067,000,000원 $\{=10,000,000,000\text{원} \times 30.67\%\}$ 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다음날인 2014. 9. 1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호 판사 박나리 판사 윤동현

1)담보채권 2,400,000,000원의 청산가치 회수율은 100%, 무담보채권 7,600,000,000원의 청산가치 회수율은 8.77%이고, 총 채권 10,000,000,000원의 청산가치 회수율 30.67%이다.